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24호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의회사무국공고 제 3 6 호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
- 의회사무국공고 제 3 7 호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4
- 의회사무국공고 제 3 8 호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9
- 보 건 소 공 고 제 2 0 4 4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 품 위 생 과 26
- 보 건 소 공 고 제 2 0 4 7 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 품 위 생 과 28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 - 36호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1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옥외행사 적용범위를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운집 행사에까지 확대하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 옥외행사의 정의 조항에 각 동에서 행정동향 파악한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 주최,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 구청장이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11. ~ 11. 1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08
----------	------

발의연월일 : 2022년 11월 10일

발 의 자 : 김재남·황규진 의원

오용환·반미선 의원

유광희·이철상 의원

장덕수·박정하 의원

이정순·이연주 의원

☐ 제안이유

- 옥외행사 적용범위를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운집 행사에까지 확대하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옥외행사의 정의 조항에 각 동에서 행정동향파악한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 주최,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 구청장이 안전관리 및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해당없음”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규모”를 “대규모 행사로,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다.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라. 구 관련 부서 또는 각 동에서 행정동향보고한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

제3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를 “옥외행사”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제1항 중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서장”을 “소방서장과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시설의 안전점검)”을 “(안전점검)”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주최자 없는 옥외행사 관리) ① 동장은 관내에서 열리는 주최,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가 파악된 경우 신속하게 동향과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 및 행사관련 부서에 주요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3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 준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행사관련 담당부서로 하여금 분담하게 하고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 、옥외행사、 、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1.----- ----- ----- ----- --- <u>대규모 행사로, 다음 각 목의</u> -----.
<u><신 설></u>	<u>가.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u> <u>나.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u> <u>다.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u>

2. ~ 10.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 (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신설>

<신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제3조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자는

는 행사

라. 구 관련 부서 또는 각 동에서 행정동향보고한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

2. ~ 10.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

----- 옥외행사-----

- . <단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② 제1항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제2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1일전까지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
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② (생 략)
<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소방서장과
경찰서장-----.

제7조(안전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주최자 없는 옥외행사 관리)

① 동장은 관내에서 열리는 주최,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가 파악된
경우 신속하게 동향과 안전을 관리
하는 부서 및 행사관련 부서에 주
요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
은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300명이
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하
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 준
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관리를 효율적으
로 하기 위하여 행사관련 담당부서
로 하여금 분담하게 하고 이행실태
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수정하여도 추가로 발생할 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 - 37호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1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와 지원범위 (안 제3조, 제4조)
- 재정지원 등, 지도 및 감독 (안 제5조, 제6조)
- 보조금의 반환 (안 제7조)
- 포상 (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11. ~ 11. 1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09
----------	------

발의연월일 : 2022년 11월 10일

발 의 자 : 김재남 의원

찬 성 자 : 이연주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와 지원범위 (안 제3조, 제4조)
- 재정지원 등, 지도 및 감독 (안 제5조, 제6조)
- 보조금의 반환 (안 제7조)
- 포상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남동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범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재정지원 등) 의용소방대에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의용소방대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8조(포상) 구청장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의1 및 제4조의2, 제4조의3에 해당하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화재 및 구급·구조 보조 등)
 -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이 남동구 의용소방대의 소방기술경연대회 준비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로 남동소방서 및 공단소방서 13개 대대에 대대당 500천원, 연간 총 6,5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정책기획국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참고자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 - 38호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11.

남동구의회의회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임용 및 배치 (안 제3조)
- 정책지원관의 직무(안 제4조)
- 직무수행의 제한(안 제5조)
- 교육훈련 (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11. ~ 11. 1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44, FAX 453-50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재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07
----------	------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10일

발 의 자 : 김재남·유광희 의원

찬 성 자 : 이용우 의원 외 1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임용 및 배치 (안 제3조)
- 정책지원관의 직무 (안 제4조)
- 직무수행의 제한 (안 제5조)
- 교육훈련 (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남동구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임용 및 배치)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를 “정책지원관을 둔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를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한 사무를 처리한다. ”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3항을 삭제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22-204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 11. 11.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2. 11. 11. ~ 2022. 11. 25.
3.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제1항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적용
4. 당사자 및 과태료처분 예정사항

업 종	업소명	영업주	영업장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내역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주식회사 토향	주식회사 토향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7, 가주프라자 5층 502호 (구월동)	2021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내납부시 16만원)

5. 의견제출기한 : ~ 2022. 12. 09.
6. 공고내용 : 위 당사자는 2022. 12. 09.까지 남동구청 환경교통국 식품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남동구청 환경교통국 식품위생과 (☎032-453-262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22-2047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 11. 11.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2. 11. 11. ~ 2022. 11. 25.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 41조 제1항(식품위생교육) 위반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4항(과태료) 적용
4. 당사자 및 과태료처분 예정사항

업 종	업소명	영업주	영업장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내역
일반음식점	곱사마	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83번길 63-2, 1층 103호 (만수동)	2021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내납부시 16만원)

5. 의견제출기한 : ~ 2022. 12. 09.
6. 공고내용 : 위 당사자는 2022. 12. 09.까지 남동구청 환경교통국 식품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남동구청 환경교통국 식품위생과 (☎032-453-2624)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